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확대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제33456호, '23.05.09. 공포, '23.08.10 시행) 사항을 반영하고, 기술자격 인정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건설업 관리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기준 합리화(안 제2장 제3호 라목)
- 나.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확대(안 제2장 제3호 아목)
- 다.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결정기준 합리화(안 제8장 제2호)
- 라.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중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술자격 취득자 조건의 합리화(안 별지 5)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예규 제372호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호나목(1)(나)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와 자산증빙 서류로 확인하고,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및 부채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위해 등록신청자(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 명의의 자산은 불인정) 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
 - 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② 30일 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③ 사무실 임차시 임차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④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⑤ 그 밖에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제2장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사무실의 위치 :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도(종합건설업의 경우) 또는 시·군·구(전문건설업의 경우)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 (2) 사무실의 범위
 - (가)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어야 한다.

(나)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건설업 영위를 위한 상시 사무실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1호(단독주택)와 2호(공동주택), 21호(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실로 인정한다.

(다)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3) 사무실 기준의 적격 여부 확인 방법

(가) 사무실 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와 사무실의 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등의 확인 등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례적용이 되는 업종을 1개에 한정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그 동안의 적용횟수와 관계없이 적용되고,”로 한다.

제2장제3호아목 중 (3), (4)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자목(2) 중 “건설업종에 대해 1회에 한하여”를 “1개 업종에 대하여”로 한다.

제8장제2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나 (3)”을 “법 제83조제3호의2호”로 한다.

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건설사업자의 재무 상황 및 처분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부과받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나. 영 별표6 2. 개별기준 나목 중 비고란의 직선보간법 적용례는 별지3에 의한다.

제10장 중 “2024년 2월 3일”을 “2026년 8월 31일”로 하고, 별지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제3호아목(1) 중 “인정한다”를 “본다”로 하고, 같은 목 (2) 중 “1회에 한정하여” 중 “1회”란을 “1개 업종에 한정하여”란 특례적용 시점에서 특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굴착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조립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다듬질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토 목	농어업토목	토목	토목	토목	토목	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 형공간정보		응용지질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 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콘크리트 포 장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콘크리트 포 장	
건 축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목제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 계 건축제도 철 근	거푸집 건축목공 비 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 근	거푸집 건축목공 비 계 철 근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지하수	화약류관리 굴 착 지하수	시 추 화약취급	시 추 굴 착	
국토개발	지 적	지 적	지 적	지 적	지 적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2. 실내건축공사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건 축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목제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 실내건축	건축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 배 비 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 배 비 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건축목공 도 배 비 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공 예				목공예 가구제작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3.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기계	기계가공		기중기 기계조립 컴퓨터응용가공	기중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연 삭	선 반 밀 링 연 삭
	금형	금형제작 판금제관	일반기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설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전산응용기계제도 금형 판금제관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용접	용 접	용접	용접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에 너 지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금 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전 기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 기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토 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	토목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토목제도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건 축	건축구조 건축시공 시설원예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 시설원예	건축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건축목공
				방 수 비 계 조 직 온수온돌	방 수 비 계 조 직 온수온돌	방 수 비 계 조 직 온수온돌 구들온돌
				유리시공 건축제도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제창호	유리시공
				창호제작(금속재) 목재창호	금속제창호 목재창호	금속제창호
공 예					금속도장	금속도장

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지게차 굴착기 기중기 공기압축기	지게차운전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화공 및 세라믹			화학분석		화학분석	
건 축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도 배 방 수 비 계	건축도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도 배 미 장 방 수 비 계 조 직 타 일	건축도장 도 배 미 장 방 수 비 계 조 직 타 일
공 예					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금 속					축 료	축 료
토 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 형공간정보		토목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석 공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석 공 측 량 콘크리트	석 공 콘크리트

5. 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굴착기 용 접	굴착기운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토 목			콘크리트	석 공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 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 공 콘크리트
건 축	건축시공	건축목제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거푸집 건축목공 미 장 조 적	거푸집 건축목공 미 장 조 적
국토개발	조경		조경	조경	조 경	조 경
농 립	종 자 시설원에 산 립	산 립	종 자 시설원에 산 립	종 자 원 예 산 립	종 자 원 예 산 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 립
공 예				목공예 석공예	목공예 석공예	목공예

6. 철근 · 콘크리트공사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굴착기 용 접	굴착기운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토 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결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 형공간정보		토목	토목	토목	
건 축	건축구조	건축 건축목제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콘크리트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콘크리트 포 장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콘크리트 포 장	콘크리트 포 장
건 축	건축구조	건축 건축목제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건축목공 건축목공 거푸집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건축목공 거푸집 전산응용건축제도	건축목공 거푸집 방 수 비 계 철 근
방 수	방 수 비 계 철 근			방 수 비 계 철 근	방 수 비 계 철 근	방 수 비 계 철 근

7. 구조물해체 · 비계공사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다듬질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토 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측량 및 지 형공간정보		토목	토목	콘크리트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콘크리트 측 량 콘크리트
건 축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 계 건축제도 철 근	거푸집 비 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 근	거푸집 비 계 철 근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굴 착	화약취급	굴 착

8.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배 관 관급제관 용 접	용 접	배 관 관급제관 용 접	배 관 관급제관 관급제관 폐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 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토 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 형공간정보		토목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콘크리트
건 축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거푸집	거푸집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굴 착	화약취급	굴 착

9. 철도·궤도공사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 능 사보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관급제관 용 접	관급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에 너 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토 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철도 측량 및 지 형공간정보		토목	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보 선
건 축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10. 철강구조물공사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 능 사보
기 계	기계	기계가공	일반기계	기중기 컴퓨터용용가공 기계설계	기중기운전 전산용용기계제도 컴퓨터용용선반	선 반
		관급제관		관급제관	컴퓨터용용밀링 연 삭 관급제관	밀 링 연 삭 일반관급 타출관급 계 관 철골구조물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금 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토 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 형공간정보		토목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전산용용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측 량
건 축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건축	건축 건축제도	전산용용건축제도	
공 예					금속도장	금속도장

11. 수중·준설공사업

주력분야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1. 수중공사	기계	용접	용접	용접	기중기 준설선 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토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	토목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축				철근	철근	철근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지하수	화약류관리 굴착 지하수	시추 화약취급	시추 굴착
	해양		잠수	항로표지	잠수 항로표지	잠수 항로표지	잠수

2. 준설공사 :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12. 승강기·삭도공사업

주력분야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1. 승강기 설치공사	기계	기계	기계가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다듬질	
			기계정비	일반기계	정밀측정	기계설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기계정비	정밀측정
			산업기계설비					
			금형	금형제작 판금제관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생산자동화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금형 판금제관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전기	건축전기 설비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기응용						
	전자	산업 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	공업 계측제어	공업 계측제어	공업 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응용		전자	전자	전자기기		
건축	건축기계 설비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산업응용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14. 가스난방공사업

1. 가스시설공사(제2종 및 제3종) :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주력분야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2. 난방공사 (제1종 및 제2종)	기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배관	배관	건축배관
		건설기계 용접	용접	건설기계설비 용접	용접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텀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건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설비 온수온돌	온수온돌	온수온돌 구들온돌
	에너지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전기	건축전기설비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안전관리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장 건설업의 등록</p> <p>1. ~ 2. (생략)</p> <p>3.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p> <p>나. 자본금</p> <p>(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처리한다</p> <p>(가) (생략)</p> <p>(나)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와 자산증빙 서류로 확인</p> <p>등록신청자가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및 부채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위해 등록신청자(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 명의의 자산은 불인정) 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한다.</p> <p>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p> <p>나) 30일 이상의 은행평균잔고 증명서</p> <p>다) 사무실 임차시 임차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p> <p>라)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p>	<p>1. ~ 2.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확</u> -----<u>인</u> -----<u>하고</u> ----- ----- ----- ----- ----- ----- ----- ----- -----</p> <p>① <u>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u></p> <p>② <u>30일 이상의 은행평균잔고 증명서</u></p> <p>③ <u>사무실 임차시 임차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u></p> <p>④ <u>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u></p>

마) 그 밖에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다. (생략)

라. 시설·장비 중 사무실

(1) 사무실의 범위

(가) ~ (바) (생략)

(2) 사무실보유 증명서류로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신설>

⑤ 그 밖에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다. (현행과 같음)

(1) 사무실의 위치 :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도(종합건설업의 경우) 또는 시·군·구(전문건설업의 경우)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가) ~ (바) (삭제)

(2) 사무실의 범위

(가)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어야 한다.

(나)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 여건 등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건설업 영위를 위한 상시 사

<신설>

(3) 사무실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와 사무실의 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등의 확인 등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무실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1호(단독주택)와 2호(공동주택), 21호(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실로 인정한다.

(다)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3) 사무실 기준의 적격 여부 확인 방법

(가) 사무실 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

<신 설>

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와 사무실의 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등의 확인 등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아. 건설업등록기준의 중복 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1)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법정 "최저 자본금기준"이 가장 큰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까지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2) 영 제16조제1항의 "1회에 한정하여" 중 "1회"란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한 각각 한번의 횟수

(1) -----

----- 본다.

(2) ----- "1개 업종에 한정하여"란 특례 적용시절에서 특례적용이 되는 업종을 1

를 말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추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인정 업종과 기술능력의 인정 업종을 각기 달리 선택하여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 ~ (4) (생략)

(5) ~ (11) (생략)

자. 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따른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1) (생략)

(2) 전문건설업종간 통합으로 인해 종전에 인정받았던 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복특례가 소멸된 경우, 다른 건설업종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등록기준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제16조제6항에 따라 적용받은 등록기준 특례가 소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장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1. (생략)

2.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결정기준
가. 법 제82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재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종별로 그 종류(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는 다음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개에 한정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써, 그 동안의 적용횟수와 관계 없이 적용되고, -----
-----.

<삭 제>

(5) ~ (1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1개 업종에 대하여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건설사업자의 재무 상황 및 처분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

